

(제6-8호)

소송 등의 제기·신청

1. 사건의 명칭	손해배상청구 2016 가단 000000
2. 원고·신청인	000
3. 청구내용	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건
4. 관할법원	서울지방법원 민사62단독
5. 향후대책	당사의 설립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원고가 유사한 상호를 가진 다른 회사와 혼동하여 피고를 잘못 지정한 건에 해당하여 소 취하 예정임
6. 제기·신청일자	2016.10.18
7. 확인일자	2016.10.28
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해당사항 없음

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당해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소송(가처분 포함) 등이 제기·신청된 사실이 확인된 때 신고한다.
-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및 임원의 선임·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법원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허가의 신청 등 법인의 경영사항과 관련된 분쟁
- 주2) 상기사항 외의 소송 등의 제기·신청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 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- 주3)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(외국지주회사 포함)의 자회사(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포함)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경우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 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(%)을 기재하되,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, 당해 사업연도중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.